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전문위원 윤 영 창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우리 道선 조직개편(2008. 7. 1)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,
- 상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신속한 행정절차로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(17개 부서)

○ 경제통상국(4개 부서)

- 경제정책팀 ⇒ 경제정책과
- 투자유치팀 ⇒ 투자유치과
- 기업지원팀 ⇒ 기업지원과
- 자원관리팀 ⇒ 자원관리과

○ 균형발전국(4개 부서)

- 균형정책팀 ⇒ 균형정책과
- 지역개발팀 ⇒ 지역개발과
- 교통물류팀 ⇒ 교통물류과
- 건축팀 ⇒ 건축디자인과

○ 건설방재국(2개 부서)

- 건설정책팀 ⇒ 도로과
- 하천관리팀 ⇒ 하천과

○ 농정국(5개 부서)

- 농업정책팀 ⇒ 농업정책과
- 농산지원팀 ⇒ 농산지원과
- 원예유통팀 ⇒ 원예유통식품과
- 축산팀 ⇒ 축산과
- 산림녹지팀 ⇒ 산림녹지과

○ 문화관광환경국(2개 부서)

- 관광진흥과 ⇒ 관광항공과
- 환경과 ⇒ 환경정책과

나. 부서별 주요개정 내용

○ 기업지원과

-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에 의거 민간위탁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본 조례 시·군 위임사무에 있어 제외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함.

○ 균형정책과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사무 중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사항을 시·군에서 일괄하여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,
- 자연취락지구·개발진흥지구·제2종 지구단위계획 위임 면적의 확대(10만㎡→15만㎡)와,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시설(공원, 전기공급시설, 봉안시설 등) 등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시·군에 위임

○ 지역개발과

-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위임사항을 1만㎡미만의 주제공원까지 포함하여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한 사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시·군에 위임

○ 건축디자인과

- 「주택법」개정에 따라 “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사무”가 시·도지사 권한사무에서
 - ▶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으로
 - ▶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·군수로 변경되어 시·군 위임사무 삭제

○ 하천과

- 「하천법」개정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무중 개정된 법률에 맞게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, 추가된 시·도지사 권한 사무에 대하여 시·군에 위임하며, 지방하천의 유수사용(하천수의 사용허가)에 대한 사무가 도지사

권한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

○ 농업정책과

- 「농어촌정비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“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 검사”와 “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업·생활용수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무”의 근거법령 정비

○ 농산지원과

- 「농어촌정비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“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,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, 환지계획의 인가·고시 및 통지”의 근거법령을 정비함

○ 보건위생과
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“이·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”와 “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따른 면허증 반납”사무가 시장·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시·군 위임사무에서 삭제

○ 수질관리과

- 「먹는물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법령 정비

4. 검토의견

이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에 있어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

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.

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조직개편(2008.7.1)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
 - 조직개편에 따른 17개 소관부서의 명칭변경
- 조례 규정의 일치
 - 기업지원과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 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시·군 위임사무에 있어 제외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
-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
 - 균형정책과는 자연취락지구·개발진흥지구·제2종 지구단위계획 위임 면적의 확대(10만 m^2 →15만 m^2)와,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시설(공원, 전기공급시설, 봉안시설 등) 등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개정.
 - 지역개발과는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한 사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위임사항을 1만 m^2 미만의 주제공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.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
- 건축디자인과는 「주택법」 개정에 따라 “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사무”가 시·도지사 권한사무에서 삭제
- 하천관리과는 「하천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지방하천으로 명칭변경, “비관리청”의 명칭삭제 등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, 지방하천의 유수사용에 대한 사무가 도지사권한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
- 보건위생과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“이·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”와 “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따른 면허증 반납”사무가 시장·군주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시·군위임사무에서 삭제
- 농업정책과와 농산지원과는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일부개정, 수질관리과는 「먹는물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

금번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행정절차의 간소화,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써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와의 일치,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기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하겠음

다만, 보건위생과의 “이·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”와

“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따른 면허증 반납”사무의 삭제건에 있어서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개정이 2005년 3월 31일 있었는 바, 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시기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음. 향후에는 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붙임 1.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